

안전인증소식

[Q&A]

전기용품 안전인증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KC마크, 자율안전확인제도」등이 신규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해야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응답을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 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 주의 : 본 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협회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Question 인덕션 주방기기의 빌트인 사용시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은 인덕션 주방기기를 아래와 같이 호텔이나 뷔페 및 단체 급식장의 건축물 및 구조물에 빌트인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인덕션렌지 빌트인 Unit(전기용품안전인증 취득)을 불연성 재질 case에 빌트인
- 인덕션렌지 빌트인 Unit의 몇몇 수량을 불연성 재질의 case에 빌트인
- 빌트인 할 case에 안전상 누전차단기, 환풍기를 설치 할 경우

※ 빌트인 Unit는 본체, 컨트롤이며 빌트인시 빌트인 Unit 수만큼의 각각의 본체, 컨트롤을 설치, 빌트인시 빌트인 case는 불연성 및 환기에 이상이 없으며, 빌트인 Unit의 전기적, 물리적 변경은 없음

Answer 안전인증을 받은 인덕션 주방기기를 불연성 재질의 케이스에 삽입하여 제조할 경우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됨. 또한 안전인증을 받은 인덕션 주방기기의 모양, 재질 등을 변경시키지 않고 여러 대를 불연성 재질의 케이스에 삽입하여 제조할 경우에도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안전인증을 받은 인덕션 주방기기에 대하여 모양, 재질, 전기적 특성 등을 변경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로 안전인증을 받거나 파생모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인증을 받은 인덕션 주방기기의 모양, 재질 등을 변경시키지 안혹 여러대를 불연성 재질의 케이스에 삽입하여 제조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누전차단기, 환풍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Question 외국에서 모듈별로 제작한 냉방기의 인증대상 여부

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인 냉방기(해당규격 K60335-240)의 경우에는, 제품 특성상 실내기와 실외기를 조합한 1set의 제품을 인증 대상의 범위로 하고 있는데, 냉방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 실내기(또는 실외기)의 제조국이 A국가이고, 실외기(또는 실내기)의 제조국이 B국가인 경우 서로 제조국(제조처)이 다른 실내기와 실외기를 조합한 1set의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취득이 가능한지요? 안전인증이 가능하다면 어떤 제품(실내기 또는 실외기)를 생산하는 국가를 기준으로 하여 안전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기인증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사유에 의하여 인증 취득이 불가능한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중국에서 제조된 냉방기용 실외기와 일본에서 제조된 실내기를 부분품으로하여 냉방기를 제조 할 경우에는 전기용품을 완성시키는 최종공정을 담당하는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추가로 일본에서 설계하고 중국 공장에서 실외기를, 일본 공장에서 실내기를 각각 생산한 냉방기세트를 일본 공장이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실외기와 실내기를 각각 중국과 일본에서 따로 수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일본 및 중국 공장 모두 공장심사를 받고 안전인증 유지를 위한 공장심사 등이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수입AC 어댑터의 안전인증대상 여부

미국에서 어댑터를 수입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제품이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품목인지의 여부와 대상품목일 경우 인증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해당 제품은 18V, 2A에 입력전압이 필요로 하여 미국에서 교류 110V 교류18V, 2A로 변환되는 소형 어댑터이며, 해당품목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며, UL, CE 등의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이라면 수입하는데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교류 110V를 교류 18V로 변환하는 소형 어댑터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교류어댑터'에 해당되므로 통관(출고) 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동 교류어댑터가 외국에서 인증(UL마크, CE마크 등)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우리나라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인증을 별도로 받아야만 한국으로의 수입이 가능하며, 외국에 소재한 제조자의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의한 인증신청이 가능합니다.